

[ 제1호 서식 ]

(동작구 상도동 366-12 일대)

**정 비 예 정 구 역 해 제 신 청 서**

사 업 시 행 구 역	위 치	동작구 상도동 366-12번지 일대		구역면적	12,000(m <sup>2</sup> )
	토지등 소유자	58명	조사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수 및 동의를	17명(20.6%)	
	정비 예정구역 지정일	2006. 3.23(제2006-95호)			
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비예정  
구역의 해제를 신청합니다.

2015년 6월 일  
신청자 동작구청장 (직인)

서울특별시장 귀하

구비서류 1. 상도동 366-12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검토서

# 상도동 366-12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검토서

## ■ 사업개요

- 위치 및 면적 : 동작구 상도동 366-12번지 일대(1.2ha)
- 토지등소유자수 : 58명
- 추진위원회 구성여부 : 미구성

## ■ 추진경위

- 2006.03.23 : 정비예정구역 지정 (제2006-95호)
- 2012.05.07 : 실태조사(1단계) 대상 선정
- 2013.05.07 ~ 07.05 : 주민의견 실태조사 (58명 中 17명 참여, 해제요청률 20.6%)
- 2013.07.15 : 주민의견청취 개표 결과 공고
- 2015.03.19 ~ 04.17 : 정비예정구역 해제 주민공람 (제출의견 : 없음)
- 2015.05.08 : 정비예정구역 해제 구의회 의견청취 (제252회 임시회)
  - 의견서 채택 : 원안대로 해제하는 것에 동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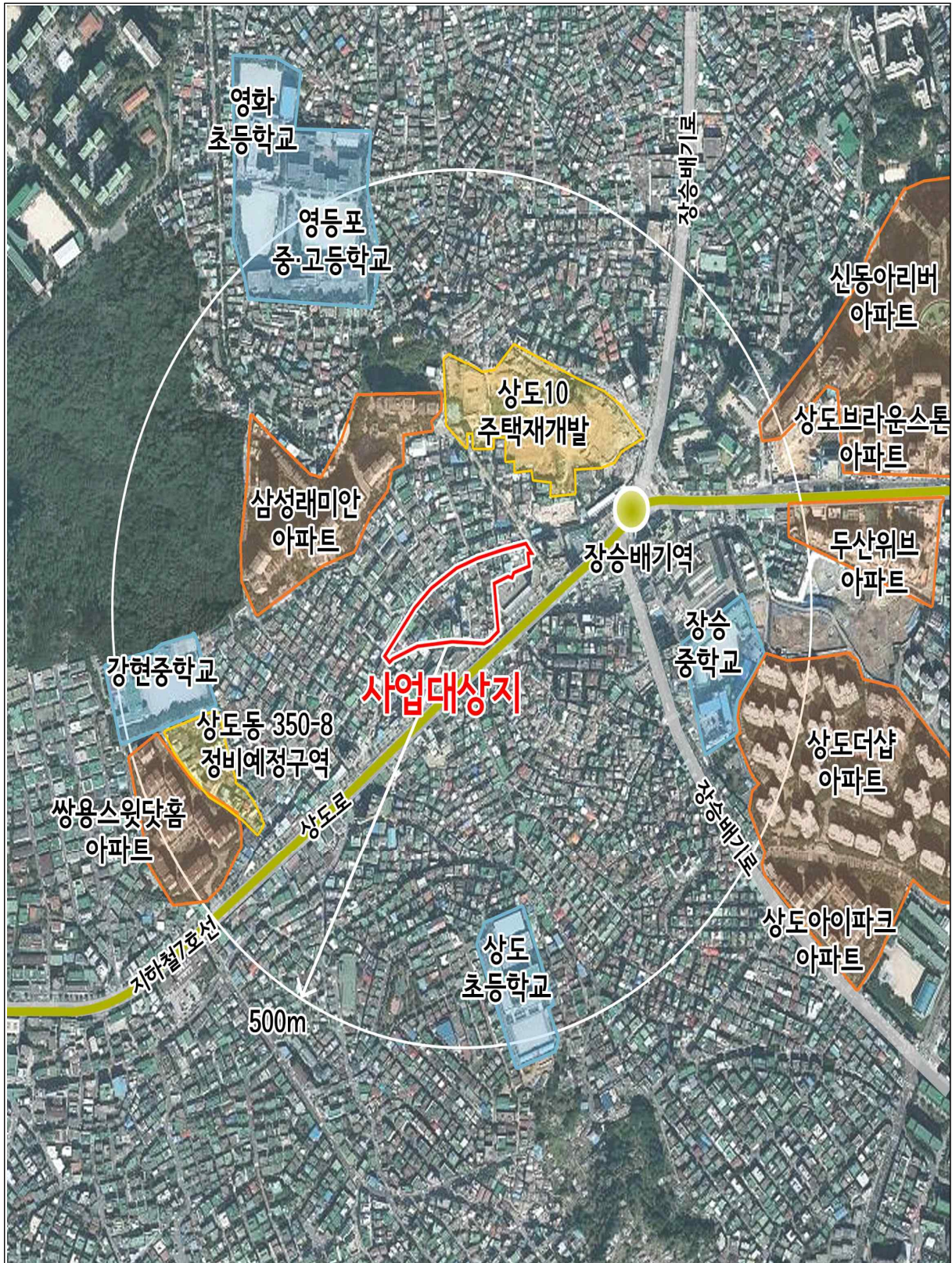
## ■ 정비예정구역 해제 요청자 : 동작구청장

## ■ 관할구청장 최종 검토의견

- 구청장은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(2012. 2. 1) 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, 서울특별시시장에게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고, 서울특별시장은 직접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함 [강행규정]
- 또한, 해당 주민들의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개발의지 미미하고, 기반시설이 대체로 양호하여 개별건축이 가능하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3(정비구역 등 해제)에 따라 해제 요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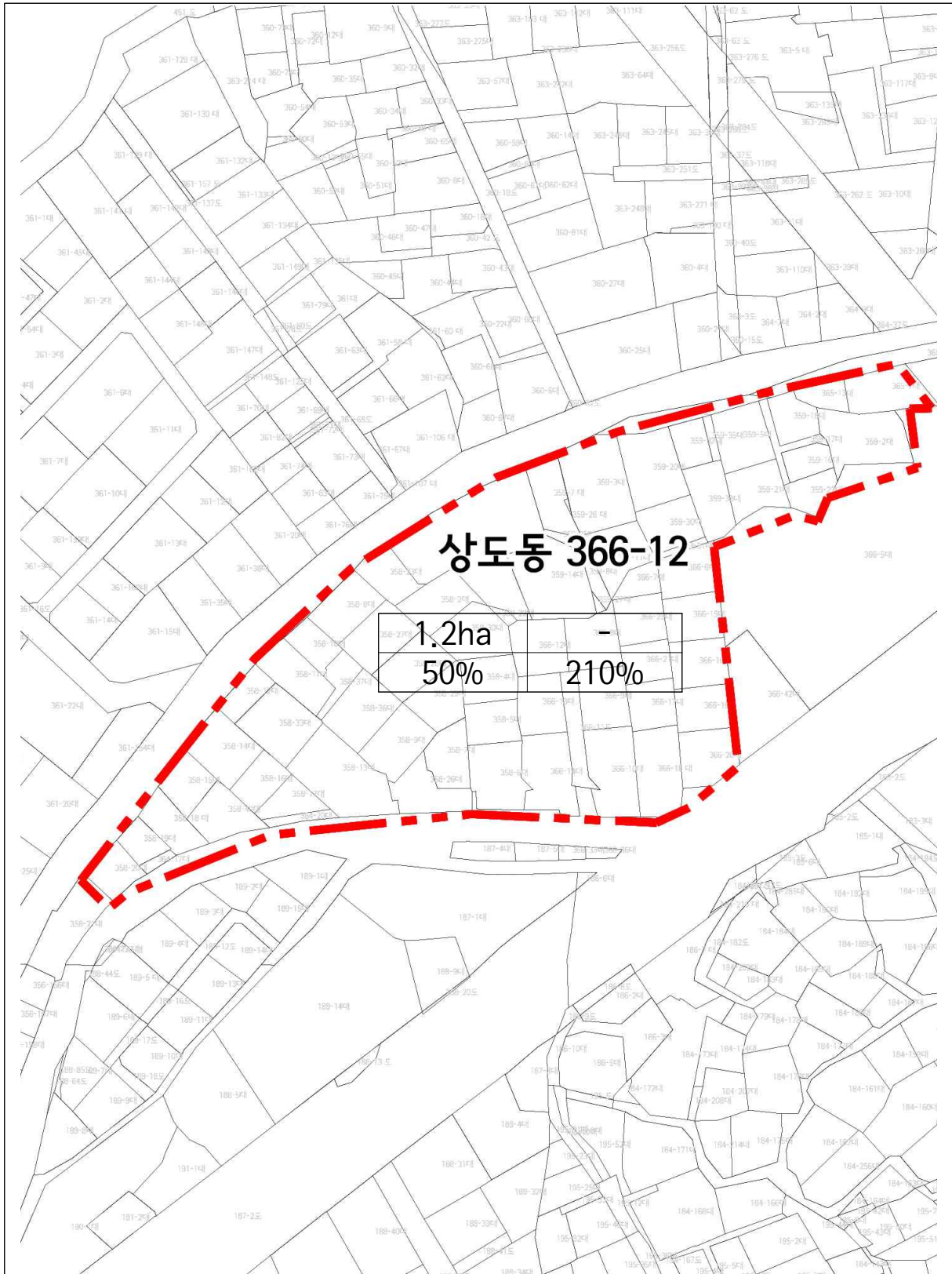


## 정비에정구역 위치도





# 정비에정구역도





## 정비에정구역 현황 사진

